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세 열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「지방세징수법」 상 '결손처분'이 '정리보류'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